##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99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이학영·김성환·박홍근

김교흥 · 김영배 · 한정애

강득구 · 김영진 · 안호영

이병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조).

법률 제 호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다목 중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를 "교도소·치료감호소"를 "교도소·치료감호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②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5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	다. 교도소・치료감호소		
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			
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